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만들라”

내년 12월 31일 시한 법 개정 결정

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징역형과 전과자 냉대 등 막대한 불이익 초래
대체복무제 도입해도 국방력에 별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기근역으로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데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을 확보해 회피 요인을 제거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고한다.

다면 병역의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전과자에 대한

냉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조용호·김창중 재판관은 “대체복무는 일체의 군 관련 복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종류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

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김일원·서기석·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역기피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조항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커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총 세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에 다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사건이 접수되면서 지난 2015년 7월에 공개변론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원 하급심에서 이와 다르게 여러 건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성 기자

▶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 관련기사 5면·6면

노동 평일·휴일 근로 포함 주 52시간 제한

유동업·금융업은 1년 유예

7월부터 노동자가 한 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 306시간을 더 일한다. 가장 적은 독일(1363시간)보다는 무려 70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주당 노동시간이 30~40시간에 맞춰져 있다.

야근이 일상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겨울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당장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다.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

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물품판매 및 보관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등)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1년 유예에 돼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업종은 공익적 요소 등의 이유로 특례업종으로 남게 돼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연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인력 충원에 걸리는 시간, 설비 증설에 걸리는 시간 등 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 적발 시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벌을 유예한다고 현장의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무와 휴게의 중간 영역에 있는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볼지 휴게시간으로 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서 간 회식은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뉴스1

법·제도 금융·재정·조세 등 11개분야 재구성

30개 정부부처 138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이다.

기재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달라지는 사항을 부처별, 적용(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문화재, 환경, 산업·에너지·자원,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

11개로 재구성해 정리했다.

직업 대상별로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농·림·어업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대규모 회사, 근로자, 공무원, 소비자, 자동차 운전자, 차량 운전자, 교육기관, 국가유공자, 군인, 문화재매매업자, 방위산업체, 어린이집, 연평해전 전사자, 장애인, 토지 소유자 등 22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0~5세), 영유아 및 아동(생후 6개월~12세),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18세), 청년(19세 이상), 청소년~청년(15~34세), 청년(19~29세), 청년~중장년(19~64세), 어르신, 전연령 등으

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이번 책자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제작했다.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제공해 시각적으로도 보기 쉽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접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f.go.kr)에서는 키워드별 검색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뉴스1

행정 문서24서비스, 정부업무 전 분야 확대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

하반기 ‘문서24’ 서비스가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문서24’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된다. 재해저감 검토기준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도 시행된다.

◇문서24 서비스 확대... 양방향 유통체계도 마련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월부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한다. 민간 간 양방향 문서유통 체계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2016년 7월 서비스 개

후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했다.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9월부터는 국민이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단방향(국민→행정기관) 공문서 제출 서비스를 양방향(국민←행정기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제공한다.

◇방재신기술보호기간 확대

행안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과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에 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됐다.

방재신기술 지정업체를 위해 방재신

기술 보호를 최초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 기간 연장 후 1~4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재신기술은 공사와 관련된 기술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정 후 입찰, 설계반영, 시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발주자의 책임부담과 기술의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신기술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신기술 지정을 받아도 보호기간 안에 활용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확대해 방재신기술 실용화 촉진과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

행안부는 재해저감 검토기준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도 시행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분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뉴스1

복지 9월부터 0~5세 아동 한명당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0~5세 아동 한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총 22개다.

아동수당은 0~5세 자녀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며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수당을 신청하면 소급적 용액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작 일주일만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신청 대상자(253만명)의 42.7%에 달하는 107만9454명(84만9654가구)이 수당을 신청했다.

애초 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택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수당은 신청자 가운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3인가구 기준 소득+재산 월 1170만원) 이하인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20일부터 아동 주 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기준급여액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만 인상해왔다. 약 500만

명의 노인이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행 20만900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2021년 30만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 목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0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초차표지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8월부터 단상자판 1급과 상자기능 1급 장애를 지닌 국민들이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뉴스1